

1996. 9.

19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

심 사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목 차

1. 심 사 경 위	49
2. 제안설명요지	49
3. 검토보고요지	50
4. 주요지적사항	51
5. 심 사 결 과	51
6. 소수의견 요지	51
7. 기타 필요한 사항	51

19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5. 9. 2 충청북도지사

나. 회 부 일 자 : 1995. 9. 18

다. 상 정 일 자 : 제129회 임시회

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(96. 9. 19) 상정

질의답변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박 경 국)

1995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7억 1,540만 4천원으로 그중 유족보상금의 21건에 45억 887만 6천원이 지출되고 2억652만 8천원은 불용액임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지출결정액	지출액	불용액	비 고
예 비 비	4,715,404	4,508,876	206,528	

3. 검토보고 요지

(보고자 : 전문위원 우 병 수)

< 일반회계 >

1995년도 예비비 결산액은 47억 631만 3천원으로 그중 유족보상금외 20건에 44억 9978만 5천원이 지출됨.

그 내역을 보면

보상금 5,479만 2천원을 지출한 것은 고 김용구의 유족보상금으로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출이었고,

소송위탁수수료, 위탁사업비, 가뭄대책비, 수해복구비, 배상금, 위험교량정비등도 예측을 불허한 것으로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이었다고 사료됨.

다만 도지사 이,취임식 경비등의 집행은 예비비제도의 취지가 천재지변등 예측할 수 없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것에 있는바,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임.

< 특별회계 >

지역개발공채제조대금으로 이권이 없음.

4. 주요지적사항

○ 없음.

5. 심 사 결 과

○ 도 원안대로 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.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.

첨 부 : 1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(안) 1부. 끝.